

새로 改正 공포된 科學技術振興法

(法律 제4402호, 1991년 11월22일자)

第1條(目的) 이 법은 科學技術진흥에 관한 기본 施策 및 綜合計劃수립과 그 시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과학화와 經濟·産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第2條(基本施策의 강구) 국가는 국민의 자발적인 과학기술연구활동을 장려·육성하고,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, 산업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新技術을 보급·지원하는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第3條(綜合計劃의 수립·시행) ① 科學技術處長官은 中·長期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다음 각호의 계획이 포함된 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(이하 "綜合計劃"이라 한다)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,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 조정·관리한다.

1. 과학기술연구개발계획
2. 과학기술인력개발계획
3. 과학기술투자계획
4. 과학기술정보유통계획
5. 과학기술연구개발기관 설립·육성계획
6. 산업계·학계·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 촉진계획
7. 국제과학기술협력계획
8.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 촉진에 관한 계획
9.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계획

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이에 따른 업무를 관리한다.

第4條(科學技術豫測) ① 科學技術處長官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정기적으로 예측하여야 한다.

② 科學技術處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에 관한 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교육·연구기관 기타 公·社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기관 기타 公·私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第5條(綜合科學技術審議會) ① 정부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과 과학기술관련부처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綜合科學技術審議會(이하 "審議會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·조정 기타 관련중요정책의 조정
2.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소요예산의 종합조정
3. 국가적인 중요연구개발사업의 선정
4. 과학기술의 교육·연구기관의 육성
5. 과학기술인력개발에 관한 중요계획 및 관련정책의 조정
6. 중요한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증진
7. 중요한 기술개발의 촉진 및 관련제도의 발전
8. 과학기술정보의 생산·유통 및 활용의 촉진
9.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 촉진
10.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

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의장은 國務總理가 되고, 부의장은 經濟企劃院長官이 되며, 위원은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者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.

- ⑤ 심의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,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처 장관이 된다.
 -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- ⑦ 심의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·검토 및 사전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되, 간사위원이 이를 관장한다.
 - ⑧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第6條(審議會議決事項의 적극 추진등)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관련과학기술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, 그 세부추진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第7條(科學技術研究開發) 정부는 과학기술의 연구·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조정·관리하고, 당해 업무수행의 기준이 될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한다.
- 1. 연구개발기관의 지원·육성에 관한 사항
 - 2.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
 - 3. 연구원의 양성·확보에 관한 사항
 - 4. 연구개발체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과학기술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
第8條(科學技術人力開發)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, 과학기술교육의 강화, 기술훈련의 촉진, 과학기술자의 확보·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한다.

- 第9條(科學技術投資의 擴大) ①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대·효율화하고, 그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소요예산 또는 매출예정액에 適正比率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해당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1.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사업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, 산업적·경

- 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
- 2.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
- ③ 정부는 기업의 과학기술투자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.

第10條(科學技術情報の 振興)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정보의 생산·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조정한다.

- 1. 과학기술정보기관의 육성
- 2.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제확립
- 3. 전자계산조직 및 그 이용기술의 도입·개발·활용과 정보처리기술인력의 養成
- 4.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보산업의 육성

第11條(協同研究開發의 촉진) ① 정부는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인력·시설·기자재·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산업계·학계·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중요한 국가적인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연구개발기관의 長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자의 상호교류를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기관간에 상호교류되는 과학기술자는 상호교류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第12條(科學技術協力)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外國정부·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법인·단체와의 科學技術협력을 촉진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기본시책 및 종합적인 계획을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, 그 시행을 조정·관리한다.

- 1.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촉진·지원
- 2. 과학기술정보 및 과학기술자의 국제교류
- 3. 과학기술관계 국제회의의 개최·참가

- 4. 국제과학기술정보수집의 지원
- 5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第 13 條(科學技術에 대한 國民의 理解增進施策講究)

① 정부는 새롭고 다양한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·受容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담당할 法人을 지정할 수 있고,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第 14 條(科學技術振興基金)

①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科學技術振興基金(이하 "基金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- 1.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
- 2. 기금운용수익금
- 3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

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- 1.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과학기술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
- 2.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

④ 기금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운용·관리하되,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⑤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第 15 條(科學技術財團)

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

한 연구개발능력의 배양, 과학기술교육의 진흥, 국제교류의 증진 등을 통한 과학기술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科學技術財團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科學技術財團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第 16 條(技術評價 및 技術基準)

①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·문화 등 제부문에 대한 便益增進효과 및 부작용을 사전에 평가하고,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을 제정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과학기술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제정·시행을 關連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대상기술의 범위 및 평가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제정·시행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第 17 條(科學技術專擔要員의 지정)

① 심의회의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特別市長·直轄市長 및 道知事는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진흥에 관련된 업무총괄 및 대외협의를 담당할 과학기술전담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과학기술전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第 18 條(褒賞)

정부는 과학기술에 관한 발명·연구·개발·응용 또는 그 진흥 및 기업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그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第 19 條(科學技術法人·團體 등에 대한 보조)

정부는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·단체 또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과학기술의 연구·개발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附 則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科學技術振興法 改正理由

'90년대의 國家發展을 선도하게 될 汎政府的 차원의 중요핵심문제로서 과학기술진흥업무를 더욱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종합계획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·발전시키고, 綜合科學技術審議會의 심의·조정기능을 보완하여 그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여, 과학기술투자를 확대·효율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, 과학기술의 産·學·硏협동연구개발체제를 강화하며, 새롭게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·수용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는 등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제반시책 및 제도를 확립하고,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술평가 및 기술기준의 제정·시행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며, 불필요하게 된 科學技術振興委員會 및 과학기술자의 겸직제도 등을 삭제·정비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.

主要骨子

1. 科學技術處長官은 중·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의 일환으로서 科學技術綜合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, 동 종합계획의 내용에 과학기술투자계획, 과학기술정보유통계획, 과학기술연구개발기관의 설립·육성계획, 산업계·학계 및 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촉진계획 등을 새로이 추가함.
2. 綜合科學技術審議會의 심의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17인에서 21인으로 증원하고, 동 심의회의 심의대상에 새로이 과학기술정보생산·유통 및 활용의 촉진,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, 동 심의회에 副議長制를 신설하여 이를 經濟企劃院長官이 맡도록 하고, 심의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,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처장관이 하도록 하며, 위원의 임기에

- 관한 규정을 신설함.
3.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관련과학기술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고, 그 세부추진계획 및 실적은 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.
 4.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투자를 확대·효율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사업 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, 산업적·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요예산 또는 매출예정액에 적정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.
 5. 정부는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인력·시설·기자재·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산업계·학계·연구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.
 6. 과학기술처장관은 중요한 국가적인 연구개발문제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자의 상호교류를 권고·알선할 수 있고, 당해 과학기술자는 상호교류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.
 7. 정부는 새롭고 다양한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·수용능력을 신장시켜 주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, 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시책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게 할 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, 동법인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 8.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·사회·문화 등 제부문에 대한 便益增進효과 및 부작용을 사전에 평가하고,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을 제정·시행하도록 함. <법제처 제공>